

# 서울시립교향악단 예비비 사용 보고

## 1. 보고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22조의2제3항에 의거, 재단 주요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비비 사용에 대해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[평가급 지급] 재단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급 지급률이 130%로 결정되었으나, '24년 평가급 예산이 지급률 70% 기준으로 편성되어 일반예비비를 관리비 예산으로 이용하여 평가급을 지급함
- [신규채용 인건비 지급] '24년 신규로 채용된 교향악단 단원 4명의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등(4대보험금) 지급을 위해 정-현원차봉급예비비의 일부를 인건비와 관리비로 편성함
- 예비비 사용 규모: 241,906천원(예비비 전용시기: '24년 12월)

(단위 : 천원)

정책	단위	세부사업	예산액	예비비사용	최종예산액
<b>행정운영경비</b>			17,381,847	241,906	17,623,753
		인건비	14,385,426	83,642	14,469,068
		관리비	2,717,053	158,264	2,875,317
		시설비	279,368		279,368
<b>예비비</b>			322,698	△241,906	80,792
		예비비	322,698	△241,906	80,792
		일반예비비	150,000	△150,000	0
		정-현원차봉급예비비	172,698	△91,906	80,792

## [별첨 1] 보고근거

### ■ 「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22조의2(예산 및 결산의 제출 등) ③ 출자·출연기관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서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.